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-14호

「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12일

## 강릉시 의회의장

#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9조, 제10조)
- 협의회 자문을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(안 제2조)
-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(안 제13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4
- 팩스: 033-640-4070

### 4. 참고사항

-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하여 45인” 을 “1명을 포함하여 45명” 으로 하고,  
같은 조 제3항 중 “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” 을 “전문지식을 갖춘 사  
람 중에서 강릉시장(이하 ” 시장 “이라 한다)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  
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제6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” 를 “보궐위  
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  
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인과 서기 1인” 을 “1명과 서기 1명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조례의 의한” 을 “조례에 따라 개최되는” 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4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협의회 지원)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강릉시경제살리기협 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는 협의 회장 <u>1인</u>을 포함하여 <u>4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 의 경우 특정 성(性)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은 시의회의원, 학계, 연구 기관, 사회단체, 기업인 등 풍부한 경험과 <u>식견을 갖춘 자</u>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 <u>1명</u>을 포함하여 <u>45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 <u>전문지식을 갖춘 사람</u> 중에서 <u>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</u>-- -----.</p> <p>④ <u>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민 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 · 건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항</p>	<p>제4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②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협회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 (생략)

제9조(시장의 출석)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견청취 등) 협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언·건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5조(임기) ① -----  
-----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-----.

② ----- 그 밖의 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-----  
----- 간사 1명과 서기 1명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시장의 출석) -----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-----  
-----.

제10조(의견청취 등) ----- 제4조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3조(협의회 운영지원)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협의회 지원)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